

합병계약서

주식회사 넥사이트(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의무의 인계와 승계) “을”은 2018년 6월 30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4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승계한다.

제3조(신주배정 및 자본금 증가) ① “갑”은 합병으로 인하여 제4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1주(1주의 금액 500원)에 대하여 “갑”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0.1294주(1주의 금액 5,000원)의 비율로 총 258,800주(보통주식 200,000주, 우선주식 58,800주)의 주식을 할당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총 258,800주(보통주식 200,000주, 우선주식 58,800주)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갑”)가 소멸회사(“을”)로부터 승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총 258,800주(보통주식 200,000주, 우선주식 58,800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본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소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본금 증가는 없다.

④ “갑”의 증가할 준비금 총액은 제4조에 정한 합병기일 현재 관련법령 및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18년 11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과 “을”의 대표이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합병승인 주주총회 기일) “갑”과 “을”은 2018년 10월 22일을 기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을 승인하고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선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 “갑”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합병보고총회에서 선임기로 한다.

② 상법 제527의4(이사, 감사의 임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보고총회일 또는 그 이전에 사임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는 당초 선임일을 기준으로 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종업원 승계) “갑”은 제4조의 합병기일 현재 “을”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

제9조(존속회사의 정관변경) 합병에 의하여 “갑”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단, 정관변경의 효력은 제4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갑”의 정관 제2조(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을 변경(삭제 및 추가)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 및 서비스업
2.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제조, 공급 및 서비스업
3.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기기, 음향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4.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5. 정보의 처리, 제공 및 관련용역업
6.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7. 정보통신,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서비스업
8.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9. 연구 개발 용역업
10.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
11. 전자 의료기기 및 생체 신호 측정장치
12.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 자문, 공급 및 서비스업
13. 의료기기 검사업
14. 통신판매업
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창고업, 주차장운영업
16.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 부대사업 일체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계약체결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사항) 본 계약 규정 이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갑” 과 “을” 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12조(해산비용의 부담)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전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단, 합병을 함에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 계약성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5일

갑 : 주식회사 넥사이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407호
(안양동, 경기벤처연성대학교센터)
대표이사 이 상 근



을 : 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삼평동, 유비쿼스빌딩)
대표이사 김 수 한

